

동행노인주간돌봄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보험 인정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 등급의 변동과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재계약은 “갑”이 계약해지 통보 또는 본 계약내용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1년 단위의 계약을 자동 연장할 수 있다.

단, “갑” 또는 “병”은 재계약시 “갑”이 법정 전염병(간염, 결핵)이 없음을 확인하는 건강진단서를 재차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시 이를 즉각 반영한다.

다. “갑”이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 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소정의 양식에 의해 신청하여야 한다.

라.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마. 계약목적은 지역사회 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바.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 주야간보호 이용시간별 급여비용(원)

등급		수가	본인부담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1	41,820	6,273
	2	38,720	5,808
	3	35,740	5,361
	4	34,120	5,118
	5	32,490	4,874
	인지지원	32,490	4,874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1	56,060	8,409
	2	51,930	7,790
	3	47,940	7,191
	4	46,300	6,945
	5	44,650	6,698
	인지지원	44,650	6,698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1	69,730	10,460
	2	64,590	9,689
	3	59,640	8,946
	4	58,010	8,702
	5	56,360	8,454
	인지지원	56,360	8,454
10시간 이상 ~ 13시간 이하	1	76,820	11,523
	2	71,160	10,674

등급		수가	본인부담
	3	65,750	9,863
	4	64,090	9,614
	5	62,460	9,369
	인지지원	56,360	8,454
13시간 초과	1	82,370	12,356
	2	76,310	11,447
	3	70,500	10,575
	4	68,860	10,329
	5	67,240	10,086
	인지지원	56,360	8,454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한도액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676,320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부담 비율

구분	재가급여
일반	15 %
기초수급권자	0 %
기타 의료수급권자	6 %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본인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9 % , 6 %

○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 기준

비급여 청구 항목	금액	비고
① 식사재료비	3,900 원	* (1식) 기준으로 계산
② 간식비	1,000 원	* (2회) 1일 기준으로 계산

※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 비용 발생은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 이용자나 보호자는 매달 안내되는 납부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아.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전자메일 등에 의한 청구를 할 수 있다.

2.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가.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권리 갖는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 면회 및 외출에 관한 권리

3.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4. 이용자가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의무를 갖는다.

1. 입소자의 신원인수인이 변경되거나, 사망 또는 금치산,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았을 때, 강제집행, 가처분, 경매 혹은 화해신청을 받거나 또는 신청할 때 센터에 통보에 관한 의무
2. 신원인수인은 이용자의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3.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4. 이용자의 인적사항 등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5. 신원인수인이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대한 통보 의무
6.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3. 이용료 및 비용변경

가. “갑”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 산정에 따라 급여비용을 납부한다(※ 등급별 수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매년 고시금액)에 의거 산정한다).

나. “갑”은 비급여 비용을 청구서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비급여 내역은 별도의 ‘이용비용 안내’를 참조한다.

다. “갑”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 산정에 따라 해당 월 본인부담금 급여비용과 비급여 비용을 익월 을이 청구하며, 청구서 수령 후 1주일 이내에 을이 지정한 은행계좌에 계약한 이용자 명의로 납부한다.

4. 계약의 해지 및 종료 [갑(이용자) / 을(동행노인주간돌봄센터) / 병(보호자)]

<계약자의 의무>

① “을”과 “갑” 그리고 “병”은 다음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을”의 의무

(1) 센터이용 1개월 이내에 건강상태를 고려한 서비스제공 수립 및 “병”에게 전달하고 서비스 제공 계획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

- (2) “갑”의 건강관리 협조의무
- (3) “갑”의 신변이상을 “병”에게 즉시 연락의무
- (4) 식사제공 및 이용 상담, 조언 및 이용편익 제공의무
- (5)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의무
- (6) 기타 “갑”의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활동제공
- (7) “갑”또는 “병”의 의견제시에 따른 협조의무

2. “갑”의 의무

- (1) 월 이용료 납부의무
- (2) 센터의 건전한 이용분위기 조성의무
- (3)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의무
- (4) 기타 시설이용 규칙이행 의무

3. “병”의 의무

-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 (2) “갑”의 월 이용료 및 입소비용 부담의무
-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시 즉시 통보의무
- (4)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산정 및 “을”에게 통보의무
- (5) 보호자 교육, 가족간담회의 참석의무
- (6) “을”의 요청에 따른 상담 의무
- (7) “갑”에 대한 가정 내 케어 이행의무
- (8) 기타 시설 협조요청 이행 의무

<“을”의 계약 해제와 종료>

① “을”은 “갑” 또는 “병”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 기간을 두고 이 계약의 해지를 통고한다. “을”이 계약해지를 통고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보호자는 이용자의 신병인수를 하여야 하며, 불이행시는 강제로 퇴소 조치한다.(단, 수급자 제외)

1. 이용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 하였을 경우
2. 이용비용 또는 “을”에게 지불하여야 할 비용 등을 1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
3. 이용비용 또는 “을”에게 지불하여야 할 비용을 자주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고, “을”, “갑”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을이 인정할 경우
4. 타 질환발생 등으로 전원 등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한 경우
5. 건물, 부대시설 또는 대지 등을 고의, 중대한 과실로 오손, 파손, 멸실 하였을 경우
6. 장기간의 부재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없다고 “을”이 인정할 경우
7. 공동생활의 질서를 혼란시키거나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 될 경우
8.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갑”의 계약 해지>

① “갑”은 이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14일이상의 예고기간을 갖고 “을”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고 이에 기재된 계약 해제 일을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한다.

② “갑”이 서면 제출을 하지 아니하고 해제할 때는 “을”이 그 사실을 알게 된 다음날부터 가산하여 15일째에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한다.

<계약의 종료>

① 계약은 다음 사유에 의해 종료된다.

1. “갑”이 사망하였을 경우
2. “갑” 또는 “을”, “병”이 어느 한쪽이 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